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7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8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 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7. 20) 상정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3.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실장 윤 형 식)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의 제도적 수용장치 마련을 위해 2000년도에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연서하여야할 주민수가 20세이상 주민 1,000명 이상으로서 참여가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축소 개정하여 주민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1,000명이상에서 20세이상 으로 500명이상 으로 조정함(안 제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3호
의결연월일	2003.3.19 (제103회)

제안년월일 : 2003. 3. 13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청구인수를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
(안 제2조)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중 “500명”을“200명”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 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u>1천명</u>이상이어 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u>500명</u>----- ----- -----.</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u>200명</u>----- ----- -----.</p>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천명 이상"을, "20세이상 으로 500명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u>1천명 이상</u>이어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u>20세 이상</u> 으로 <u>500명 이상</u> ----- -----</p>